



교육감 규정

번호: A-630

제목: 학생 종교적 규정

항목: 학생

발행: 2009년 6월 29일

변경 사항 개요

본 규정은 2003년 2월 19일 자 교육감 규정 A-630을 대체합니다.

학생의 종교 교육을 위한 학생 하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. 또한 종교적 의식 및 활동 준수를 위한 조정 요청을 처리하는 학교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

변경 내용:

- 규정의 포맷이 바뀌었습니다.
- 학부모는 종교 기관에서 매 학기 학생의 하교 시간 출석에 대한 기록을 받아 늦어도 해당 학기 마지막 날 전까지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

교육감 규정

번호: A-630

제목: 학생 종교적 규정

항목: 학생

발행: 2009년 6월 29일

요약

본 규정서는 종교 교육을 위한 학생 하교 및 종교의식 및 활동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정 제공에 대한 학교 가이드라인, 규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 본 규정은 2003년 2월 19일자 규정 A-630을 대체합니다. 모든 빌딩 사무직원 및 교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.

I. 개요

학생들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학교는 반드시 학생들이 종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. 동시에 학교는 반드시 헌법으로 금지된 정부차원의 종교 지지 또는 불필요한 종교적 연루에 주의해야 합니다. 이 또한 종교적 의식 및 활동 준수를 위한 조정 요청을 처리하는 학교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 이러한 규정은 모든 학생과 종교 활동에 똑같이 적용됩니다.

A. 종교 교육/학습을 위한 하교 시간

뉴욕주 교육부 규정(CR 109.2)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은 수업이 있는 수요일의 마지막 수업시간을 종교적 학습/교육을 위한 "하교 시간"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허가를 받은 학생은 학교 건물 또는 부지 밖에서 실시되는 종교적 학습/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이 시간 동안의 조퇴가 허용됩니다. 반드시 적절하게 수립된 종교기관이 유지, 운영 또는 관리하는 종교 학습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.

1. 학부모의 ¹책임:

- a. 종교 교육의 목적으로 하교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각 학부모는 반드시 서명한 자녀 하교에 대한 서면 허가서 및 종교 학습 프로그램의 학생 등록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서명한 서면 허가서에 반드시 종교 학습이 제공되는 종교기관 및 위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b. 학부모는 자녀가 더이상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교 교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c. 학부모는 반드시 학교 수업 단축으로 인해 조기 하교하게 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d. 학부모는 종교기관에서 매 학기 학생의 하교 시간 출석에 대한 기록을 받아 늦어도 해당 학기 마지막 날 전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2. 학교의 책임:

학교는:

- a. 섹션 I.A.1.a 에 따라 서명한 서면 허가서 및 학생의 종교 학습 기관 등록 자료의 사본을 받은 후 수업이 있는 수요일 마지막 시간에 학생이 종교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을 하교 시킵니다. 서명한 허가서 및 종교 학습 프로그램 학생 등록 자료는 학교에 보관됩니다.
- b. 학생 및 교사에게 하교 시간이 다가옴을 상기시킬 시스템을 만듭니다. 이러한 하교는 일반적인 학교 정책에 따릅니다. 학교 교직원은 즉시 하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- c.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종교 학습 프로그램에서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.
- d. 종교 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하교 시간 조정으로 인해 학업성적을 감점해서는 안됩니다.

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“학부모”란 용어는, 학생의 부모(들), 보호자(들),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(들)이나 기관,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.

- e.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주의 깊게 계획하고 반드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f.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 학생의 출석 확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. 공립학교 교직원은 종교 학습 결석에 대해 문의에 답변해서는 안되며 교육감 규정 A-820 에서 허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.
- g. 종교 학습을 위한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권유는 학교 내 또는 학교 시설 근처에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. 또한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.
- h. 상기 섹션 I.A.1.d 에 따라 매 학기 말 학교에 보관된 하교 시간 조정 프로그램 등록 학생들의 출결 보고서를 관리합니다.

B. 종교상 조정

1. 종교적 의식 및 활동 준수를 위한 조정 요청은 반드시 적절한 학교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. 이러한 요청은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식선의 일정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되어야 합니다.
2. 각 요청은 반드시 학교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세심하게 처리됩니다. 학교 교직원은 관련 법, 교육청의 의무 및 정책, 학교 및 개별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선의로 조정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. 학부모는 조정을 받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.
3. 학교 건물 및 부지 밖에서 종교적 의식 준수
 - a. 학교 건물 및 부지 밖에서 종교적 의식 준수를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개별 학생의 스케줄이 적절하고 교육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조정됩니다. 정규 수업시간 중 종교적 의식 준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.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:
 - i. 요청된 시간
 - ii. 조정이 요청된 기간
 - iii. 개별 학생의 스케줄에 미치는 영향, 예를 들어 빠지게 되는 수업
 - iv. 빠진 수업 보충 여부 및/또는

- v. 조정으로 인해 필수 수업 요건보다 적은 수업을 받게 되는지 여부.
 - b. 외부 시험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 실시되는 날 종교적 의식 준수를 위해 결석한 학생은 종교의식 준수자를 위해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추가시험 날짜를 통보 받습니다.
 - c. 적절한 출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 뉴욕주 교육부가 인정하는 종교적 휴일 또는 매년 배포되는 캘린더에 지정되지 않은 휴일을 지키고자 하는 학생은 준수일 이전 서면으로 학부모의 요청을 제출해야 결석을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사는 반드시 학생의 결석을 기록하고 교육감 규정 A-210 에 따라 ATS 시스템에 "05" 코드 (종교/문화적 의식 준수)를 입력해야 합니다.
4. 기도
- 학교 부지 내에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특정 종교에 대한 지지 또는 연루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의 기도를 위해 교실 또는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. 학교 교직원이 기도를 기획, 장려, 주도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. 주의: 고등학교 학생들은 종교적 클럽을 결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 액세스 법, 교육감 규정 A-601 및 개별 학교 절차에 따라 비-학업 시간 중 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.
5. 음식
- 음식을 하는 학생들은 원할 경우 카페테리아에서 따로 앉을 수 있습니다.
6. 기록 보관
- 학교는 반드시 종교적 의식 준수를 위해 제공된 조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 이러한 기록에는 조정 요청, 제공된 조정, 조정을 허가 또는 거부한 이유가 포함됩니다.

II. 문의처

본 규정 관련 문의 연락처:

The Office of Mandated Responsibilities

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

52 Chambers Street – Room 218

New York, NY 10007

전화: 212-374-6095

팩스: 212-374-5751